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이하 “<u>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”이라 한다)</p> <p>6. ~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이하 “<u>파생상품</u>”이라 한다)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 <p>6. ~ 9. (생략)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파생상품</u>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파생상품</u>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</p>

<p>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<u>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(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6. ~ 10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가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<u>파생상품</u>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(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12.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u></p>
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 제2호 내지 <u>제10호</u>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제19조 제2호 본문, 제4호,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 제2호 내지 <u>제12호</u>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9조 제2호 본문, 제4호, 제5호 및 제9호, <u>제11호, 제12호</u>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